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26. 4. 17.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

#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이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돌봄통합 지원 목적, 정의 및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라. 통합지원 창구, 협의체, 실무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5조)
- 마.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6제~제1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통합돌봄과
- 라. 입법예고 : 2026. 4. 7. ~ 4. 13.(6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통합돌봄 사업은 다양한 기관과 인력이 연계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역할 중복이나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과 단계적 사업 확대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조례안 제5조(통합지원 사업)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비 : 10,000천원 (참석자 수당 및 회의 운영비 등)
- 사업비 : 6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	비 고
돌봄분야	함께돌봄	가사, 식사, 이동지원 등 통합 지원	370,000	
주거분야	케어홈(중간집)	퇴원환자 일시거주 및 적응 훈련	30,000	
지역사회거주	AIP매니지먼트	맞춤형 케어플랜 및 민간 자원 연계	200,000	
합계			600,000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소요액		610	671	738	811	893	982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비	10	11	12	13	14	16
	사업비	600	660	726	798	879	966

※ 국도비 사업으로 추계 예상이 어려워 매년 10%씩 인상

○ 운영비

-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 참석자 수당 등 지원

· 예 산 : 10,000천원

· 산출내역

(회의 수당 등) 100,000원 × 2회 × 20명 = 4,000천원

(운영비/홍보비) 6,000천원 × 1식 = 6,000천원

○ 사업비 : 600,000천원

- 돌봄분야(함께돌봄) : 공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돌봄서비스 연계·제공

· 예 산 : 370,000천원

· 산출내역

(생활지원) 단가 25,320원, 2시간×주2회×4주×6개월×100명≒243,072천원

(식사지원) 단가 11,000원, 주2회×4주×6개월×134명≒70,752천원

(이동지원) 단가 11,400원, 3시간×월2회×6개월×134명≒54,993천원

- 주거분야(케어홈) : 병원 퇴원 후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단기 보호 등

· 예 산 : 30,000천원

· 산출내역

(케어홈) 단가 74,060원, 주7회×4주×3개월×5명 ≒ 30,000천원

- 지역사회거주(AIP매니지먼트 운영)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지원

· 예 산 : 200,000천원

· 산출내역

(사업 운영비) 50,000,000원×4개소 = 2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국 305,000천원(50%), 도91,500천원(15%), 시 213,500(35%)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시의 재정여건 고려하여 사업량 검토**

**4. 작성자 : 복지국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610,000	671,000	738,100	811,910	893,101	3,724,111
운영비		10,000	11,000	12,100	13,310	14,641	61,051
사업비		600,000	660,000	726,000	798,600	878,460	3,663,060
재원 조달		610,000	671,000	738,100	811,910	893,101	3,663,060
의존 재원	소 계	396,500	436,150	479,765	527,742	580,516	2,380,989
	보조금	396,500	436,150	479,765	527,742	580,516	2,380,989
자체 수입	소 계	213,500	234,850	258,335	284,168	312,585	1,282,071
	지방세	213,500	234,850	258,335	284,168	312,585	1,282,071